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9.8.22.(목) 16:00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8월 16일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21일

3. 제안 이유

-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지자체간 갈수록 치열해지는 투자유치 경쟁에 대응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로 민선7기 투자유치 40조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

- 상시고용인원 산정 시

- 개정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 → 제69조

- 추가 :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징수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추가

- 「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」 제2조제5항 → 제2조제8항

- 「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」 제28조→제29조로 변경(제25조)

나.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

- 투자진흥기금 용도에 공장 또는 건물임차료 지원 추가(제14조)

-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중복지원(입지, 고용보조금) 가능(제23조)
- 국내기업에게 외국인 기업 인센티브 준용 지원(제31조)
 - 입지지원(제20조), 교육훈련보조금(제21), 고용보조금(제22조) 투자환경개선시설지원(제25조)
- 국내기업 투자지원을 국내외기업 투자지원으로 확대(제5장)
- 타시도, 도내 투자기업 지원비율 확대(제28조)
 - 보조금 : 투자금액 5% → 10% / 본사이전 지원 2억 → 10억
- 서비스기업 보조금 지원 확대(제29조의2)
 - 보조금 : 투자금액의 2% → 10%, 최고 10억 → 20억원
- 양질의 일자리 연구원 고용보조금 지원 추가(제31조의2)
 - 고용인원 10명 초과 시, 1인당 월 200만원, 1년, 5억원 범위내 지원
- 국내외기업, 창업기업에 대한 임차료 지원(제31조의3)
 - 아파트형 공장, 건물 임차료의 50%를 2년, 최대 1억원까지 지원
-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확대(제33조)
 - 1일 상시고용 500명 이상 또는 3,000억 이상 투자기업 추가지원
 - ▶ 도내 산업단지 공유재산 장기임대, 임대료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
 - 신규 고용인원 수에 따라 설비투자금액 지원 비율 확대(별표3)
 -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해 보조금 2% 추가 지원
- 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강화(제36조)
 - 투자 정산 후 3년간 해당사업장에서 투자사업 영위
 - 사업 이행기간 동안 중요사항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 - ▶ 중요재산 반출, 변동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에 관한 사항
 - ▶ 기업구분 변경, 사업장 구성 변경, 이전, 투자기간 연장 등
- 보조금 지원 등의 취소 사유 강화(제37조)
 - 투자계획 미달성, 사업 이행기간 종료전까지 기존사업장 매각

- 기업의 경영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외부 유출·누출 금지(제38조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지자체간 갈수록 치열해지는 투자유치 경쟁에 대응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로 민선7기 투자유치 40조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-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,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으로 즉, 공장 또는 건물임차료의 추가 지원,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중복지원, 국내기업 투자지원을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이 마련될 것임.
- 다만, 동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, 비용 추계시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과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 대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함.